



제 420 회 국 회 (임 시 회)
제 2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매크로 이용 무관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 등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05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전 완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매크로 이용 무관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 등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1. 6.
3. 회 부 일: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운동경기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압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압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유형을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1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제3호)로 세분화 함(안 제6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되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나 재판매가격이 운동경기마다 다르다는 점과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크기를 ‘정액’이 아닌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액’으로 규정하고,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호 신설, 제51조제2항).

라.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호, 제51조제2항).

마.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와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매크로 이용 무관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입장권등의 구매방해·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별·판매부당이득별로 차등 처벌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
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3.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6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

-----.

<u><신 설></u> 1. · 2. (생 략)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u> 2. (생 략) 제51조(몰수·추징) ① (생 략) ② <u>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u>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생 략)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1. <u>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u>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49조의2(벌칙) ----- ----- ----- -----. 1. <u>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u> 2. (현행과 같음) 제51조(몰수·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제2호, 제49조제1호 및 제49조의2제1호</u>-----.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
---	---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1. 2. (생략) ② ~ ⑤ (생략)	----- -----. 다만, 제49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과태료) ① ----- ----- ----- -----. 1.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3.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의견

- 「경범죄 처벌법」¹⁾에 따르면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한
암표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4.
3. 26.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현행법(법률 제20413호,
2024. 9. 27. 시행)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²⁾
-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2항제4호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16만원

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 이에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³⁾ 등을 고려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구매방해·부정 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별·판매부당이득별로 차등 처벌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금지행위를 (1)구매방해행위, (2)타인의 공정 구매를 방해하기 위한 부정구매행위, (3)부정판매행위로 구분하고, 금지 행위 판단기준가격을 현행 ‘구입가격’에서 ‘판매정가’로 수정함.
- 또한, 구매방해·부정구매행위 및 판매정가 5배 미만의 부정판매 이득을 취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정가 5배 이상 50배 미만의 부정판매이득을 취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판매정가 50배 이상의 부정판매이득을 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에도, 부정판매이득액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없도록 하며, 금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국민권익위원회 2024. 8. 26. 의결,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구 분	조치사항
처벌범위 확대, 처벌수준 강화	○ (처벌범위 확대) ‘매크로 이용여부’ 무관 영업으로 공연·경기 입장권을 윗돈 거래하는 행위 금지
	○ (처벌수준 강화)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 ①암표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②형사처벌 수준 상향, ③범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
가격기준 명확화	○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 - 가격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입장권 판매 정가’로 개선
신고체계 개선	○ 암표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 법적근거 정비

[개정 내용]

	현행법	개정안								
금지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 판매 (제6조의2②)	방법 무관 입장권등의 (1)구매 방해·(2)부정 구매·(3)부정 판매 (제6조의2)								
		기준가 변경: ‘구입가격’→‘판매정가’ (제6조의2)								
벌칙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의2제1호)	금지행위별·판매부당이득별 차등 처벌 (제49조제1호, 제49조의2제1호, 제55조①제1·2호)								
		<table><tr><td>금지행위·판매부당이득</td><td>처벌</td></tr><tr><td>구매 방해·부정 구매 정가 5배 미만 판매이득</td><td>1,0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5~50배 판매이득</td><td>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td></tr><tr><td>50배 이상 판매이득</td><td>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td></tr></table>	금지행위·판매부당이득	처벌	구매 방해·부정 구매 정가 5배 미만 판매이득	1,000만원 이하 과태료	5~50배 판매이득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50배 이상 판매이득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금지행위·판매부당이득	처벌							
		구매 방해·부정 구매 정가 5배 미만 판매이득	1,000만원 이하 과태료							
		5~50배 판매이득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50배 이상 판매이득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기타	-	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 (제51조②)								
		징역·벌금 병과 제외 (제53조단서)								
		신고포상금 (제6조의3)								

○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해 보임⁴⁾.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 등을 다량 구입하여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정판매의 선행행위인 구매방해 및 부정구매행위까지

4)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포상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부정청탁에 따른 금품수수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을 신고·고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고발·검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간행물 부당구입 등 유통질서를 해하는 저자·출판사 대표 등을 신고·고발

제재할 수 있어 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기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철도사업법」 등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사인간 소액 거래가 잦은 특성을 고려하면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될 경우 행정·수사기관의 사건 인지가 보다 용이해지고 감시체계가 공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암표매매 행위 금지 및 처벌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	금지행위	처벌규정
경범죄 처벌법	경기장 등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타인에게 재 판매 (제3조제2항제4호)	16만원 이하 벌금 (제3조제2항제4호)
철도 사업법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10조의2)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1조제1항제4호)
평창 올림픽법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넘은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제25조의2)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92조제1항)
공연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4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1조제1호)
체육 시설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옷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21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8조제2항제1호의2)
국민체육 진흥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옷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6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의2제1호)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부정판매자 처벌규정 시행(2024. 9. 27.)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안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금지행위 유형과 관련하여, ‘부정판매 목적의 구매를 통한 공정구매방해행위’(제2호)는 ‘공정구매방해행위’(제1호)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 안 제49조제1호, 제49조의2제1호,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의 차등 처벌과 관련하여, 양형의 편차가 크지 않아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지 않더라도 법관의 양형 결정으로 부정판매자간 형량을 차별화할 수 있고, 부정판매에 따른 이득액이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법(벌금·징역) 대비 개정안(과태료)에서의 형이 가벼워져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문체부는 현장 암표매매를 「경범죄처벌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암표매매만을 금지하는 것이 적정하고, 금지행위(방해·구매·판매)간 유형 구분이 쉽지 않으며⁵⁾, 행위별 법정형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⁶⁾.

5) (문체부 수정안)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 등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문체부 수정안) 부당이득액 무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다수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부정 판매 금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현황]

구분	이춘석 의원안 (2942)	강유정 의원안 (3804)	조계원 의원안 (4600)	박수영 의원안 (4673)	조인철 의원안 (6353)	민형배 의원안 (4785)	김준혁 의원안 (5305)									
금지 행위	매크로 무관 부정 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제6조의2②)	-	매크로 무관 부정 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제6조의2②)			-	매크로 무관 구매방해·부정구매· 부정 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제6조의2)									
	-		-	기준가 변경 (‘구입가격’ →‘판매정가’) (제6조의2①)	기준가 변경 (‘구입가격’ →‘판매정가’) (제6조의2)											
처벌	이득액별 처벌 차등 (제49조제1호, 제49조의2제1호, 제55조②제1호)	-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제1호)			-	행위별·이득액별 처벌 차등 (제49조제1호, 제49조의2제1호, 제55조①제1·2호)									
							<table><tr><th>행위</th><th>처벌</th></tr><tr><td>구매 방해· 부정 구매</td><td rowspan="2">1,0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정가 5배 미만 이득</td></tr><tr><td>5~ 50배 이득</td><td>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td></tr><tr><td>50배 이상 이득</td><td>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td></tr></table>	행위	처벌	구매 방해· 부정 구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가 5배 미만 이득	5~ 50배 이득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50배 이상 이득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	처벌								
			구매 방해· 부정 구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가 5배 미만 이득													
5~ 50배 이득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50배 이상 이득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 (제51조④)	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 (제51조②)															
-	상습 가중 (제49조의3)	징역·벌금 병과 제외 (제53조단서)														
기타	-	판매자의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화 (제6조의2③),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5조①제1호)	-	‘신고기관’ 지정 (제6조의3)	-	부정 판매 확인 방법· 절차 등 ‘부령’ 위임 (제6조의2③)	신고포상금 (제6조의3)									

[부정판매 금지 관련 「공연법」 개정안 발의 현황]

이춘석 의원안 (2928)	강유정 의원안 (3799)	조계원 의원안 (4576)	박수영 의원안 (4674)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이득액에 따른 처벌 차등	-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	
-	입장권 판매자의 부정판매 방지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의무화,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준가격 변경 (‘구입한 가격’ →‘판매 정가’),
			‘신고기관’ 지정

[부정판매 금지 관련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현황]

조계원 의원안 (4615)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온오프라인)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 1]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운영 현황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감시·조치 현황]

(단위: 건, %)

연도	감시 건수			조치 건수			조치율 (B/A)
	신고접수	모니터링	계(A)	예매취소	경고문 발송	합계(B)	
'20년	1,607	4,630	6,237	366	129	495	7.9
'21년	1,423	16,999	18,422	207	473	680	3.7
'22년	7,829	28,994	36,823	151	670	821	2.2
'23년	14,728	37,223	51,915	80	1,214	1,294	2.5
'24년(9월말)	6,798	54,032	60,830	12	1,622	1,634	2.7

* 신고접수: 암표신고 통합사이트에 접수된 신고 건수

** 모니터링: 신고센터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한 암표 의심 사례 건수

*** 예매취소: 실제 예매취소된 건수

**** 직권취소 시 개인 간 거래 규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 이미 개인간 거래가 완료된 건의 경우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경기를 보지 못하는 피해 발생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경고문 발송 시 자진취소 유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운영 방식]

구분	내용
운영인력	3명 (신고접수·모니터링 2명, 기획·홍보 1명)
운영시간	• (신고접수) 온라인 상시 접수 • (모니터링) 09:00-18:00, 연중 무휴, 2인 교대근무
신고대상 경기	프로단체 및 구단 주최·주관 경기 (K리그, KBO, KBL, WKBL, KOVO 정규리그, 포스트시즌, 올스타전 등)
신고대상 사이트	•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 중고나라, 티켓베이, 번개장터, 당근 등 • (소셜미디어 채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신고 플랫폼	공연 및 스포츠 암표신고 통합 사이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업무 절차]

업무절차	업무내용	관리주체	수행주체
① 신고접수&모니터링	- 온라인 신고센터 통해 신고건 접수 - 모니터링 요원이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 티켓베이 • 트위터 등에서 거래되는 암표 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② 결과공유	- 일일 신고접수&모니터링 확인 - 좌석 확인 건에 한하여 티켓사에 정보 전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 티켓사) * 일 1회 15:30 보고 및 전달		
③ 좌석확인&고객정보조회	- 좌석 확인 티켓 고객예매 정보 조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 티켓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티켓사 (인터파크, 티켓링크)
④ 경고문 발송	- 암표 의심 티켓 판매자에 경고문 발송		
⑤ 결과 송부	- 경고문 발송, 확인 불가, 자진 취소 등 처리 결과 전달(티켓사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